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102
----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22.2.10.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 (제출자)	회부일	회의정보	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	3054	김희걸 의원	'22.1.25.	상정 · 심사	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'22.2.10.)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	3082	시장	'22.1.25.	상정 · 심사	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'22.2.10.)

-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(2022.2.10.) 위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,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-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,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확대함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-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함(안 제19조의7 신설)
- 자연녹지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폐율을 30퍼센트로 완화함(안 제54조제15항 신설)
-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면적을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함(안 [별표 4]제2호)
-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(안 [별표 4]제4호머목 신설)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7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영 제50조의 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.

제54조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⑮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.

[별표 4]사무명란제2호다목, 마목부터 자목까지, 거목, 너목,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다. 주차장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)
- 마. 체육시설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)
- 바. 공공공지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

- 사. 공공청사(동주민센터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분국, 보건지소에 한함)
- 아.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시설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의 변경결정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에 한함)
- 자. 문화시설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)
- 거. 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함)
- 너. 청소년수련시설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)
- 러. 시장(市場)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)

[별표 4]사무명란제4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머.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 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	개정안	
사무명	관계법령	사무명	관계법령
<p>마. 체육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하되,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)</p> <p>바. 공공공지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)</p> <p>사. 공공청사(동사무소, 파출소, 소방파출소, 우체분국, 보건의소로 한정함)</p> <p>아. 학교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의 변경결정과 유치원·새마을유아원에 한함)</p> <p>자. 문화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,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결정대상은 제외함)</p> <p>차. ~ 하. (생략)</p> <p>거. 하수도(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는 제외)</p> <p>너. 청소년수련시설(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함)</p> <p>더. (생략)</p> <p>러. 시장(市場). 다만,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(다만, 특별계획구역은</p>	<p>○ (생략)</p> <p>○ 법 제30조 제5항 단서 영 제25조</p>	<p>마. ----- 5천제곱미터 미만 -----</p> <p>바. -----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3천제곱미터 초과 공공공지의 면적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)</p> <p>사. ----- 동주민센터 ----- 보건의소로 한정함)</p> <p>아. ----- 학교 시설----- 변경결정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-----</p> <p>자. -----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되, -----</p> <p>차. ~ 하. (현행과 같음)</p> <p>거. ----- 제외함 -----</p> <p>너. ----- 5천제곱미터 미만 -----</p> <p>더. (현행과 같음)</p> <p>러. 시장(市場)(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함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	<p>○ (현행과 같음)</p> <p>○ -----</p>

현행		개정안	
사무명	관계법령	사무명	관계법령
<p>제외한다).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및 자목의 경우에는 2회 이상 나누어 변경하는 때에는 총 변경되는 합을 말한다.</p> <p>가. ~ 리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4항 조례 제18조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리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머. 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(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,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, 시장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와 제2호 각 목에 따라 사전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)</u></p>	
<p>4의2. ~ 14. (생략)</p>	<p>○ (생략)</p>	<p>4의2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(현행과 같음)</p>